

38.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3년 9월 27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상수도사업본부장)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
 -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년 10월 13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)

제안이유

-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위군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위탁 근거 마련(안 제4조)
- 편입 전 군위군에서 한 승인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(안 부칙 제2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종익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이한 소규모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방법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함과 함께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안 제4조에서는 비급수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상위법인 「수도법」 제47조(마을상수도)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·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제55조(소규모급수시설)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법체계상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대구시의 조례상 관리자³¹⁾가 대표자인 것에 비해 군위군의 조례상 관리자³²⁾는 군위군수이나,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에는 수도법 제47조³³⁾ 및 제55조³⁴⁾에 따라 군위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가 될 수 없고, 관리하여야 할 소규모수도시설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, 현행 대구시의 조례대로 관리자를 주민으로 운영할 경우 고령인구가 많은 군위군의 특성상 관리·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31) 현행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·관리조례 제2조(정의) “관리자”

: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의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.

32) 현행 대구광역시 군위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 제2조(용어의 정의) “관리자”

: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한다.

33) 수도법 제47조(마을상수도)

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34) 수도법 제55조(소규모급수시설)

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 >

(단위 : 개소)

| | 대구시 | | 군위군 |
|---------|--|-----|------|
| | 동구 | 달성군 | |
| 계 | 12 | 10 | 42 |
| 마을상수도 | 4 | 6 | 1 |
| 소규모급수시설 | 8 | 4 | 41 |
| 현운영방법 | 상수도본부 : 수질검사, 정기점검,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주민협의체 : 물탱크청소, 약품주입, 전기료부담 | | 위탁운영 |

* 마을상수도 : 100명 이상 2,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
1일 공급량 20㎥/일 이상~50㎥/일 미만인 수도

** 소규모급수시설 :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㎥/일 미만인 급수시설

- 따라서 현 실정에 맞추어 비급수지역에 한해 현행대로 관리,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은 현 체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- 다만 시장과 관리지는 위탁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, 감독이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
- 안 제6조(수질검사)와 제8조(개선조치)에서는 수질검사 결과 통보 대상을 추가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, 이 점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 및 관계자에게 설명 및 홍보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- 안 제9조(유지보수)에서는 유지보수의 주체에 수도법상 의무자인 시장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안 부칙의 경과조치는 「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것이며 이 외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찬성 의견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